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431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다31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443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32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1. 26.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321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443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다315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 1) 473,33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 2012. 1.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7,3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3,33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 1.부터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4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BF수리조합은 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된 구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 1962. 1. 21. 시행) 부칙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구 조선수리조합령이 폐지되고, BF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에 근거한 BF토지개량조합으로 되었다. 그 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같은 날 시행)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구 토지개량사업법이 폐지되고, BF토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BF농지개량조합으로 되었다가 1981. 3. 6. BG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 되었다. 그 후 BG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 1996. 6. 30. 시행)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근거법률이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2000. 1. 1. 시행)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기존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합병함으로써

BG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2006. 4. 30. 시행)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2009. 6. 30. 시행)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근거법률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농도 등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그 전신인 BF수리조합, BF토지개량조합, BF농지개량조합, BG농지개량조합도 모두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에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고와 그 전신인 조합들을 포괄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4)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6, 18, 19, 23 내지 34, 36 내지 38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57. 3. 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2 토지에 관하여는 '1957. 3. 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7, 20, 22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5. 2. 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1 토지에 관하여는 '195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기재 순번 35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점유

피고는 2006. 4. 12. 이전 불상의 시기에 이 사건 토지들에 도로 또는 인도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 17, 18, 21 내지 23, 25, 29, 31 내지 46, 50, 51,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 또는 인도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 면적, 현황, 토지수용 등 원고의 취득 경위, 분할 당시 소유자 및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설립된 원고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인접 토지의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인접 토지의 농민들에게 농로 또는 농수로로 제공하다가 인접 농지가 대지로 전환된 뒤에는 일반 공중에게 통로(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환송판결 참조).

3) 판단 가) 원고는 1957. 3. 2.과 같은 해 3. 20. 및 1965. 6. 3. 이 사건 토지들 중 합계 34필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57. 3. 20.과 1965. 2. 9. 이 사건 토지들 중 합계 4필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대부분 R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 작은 사다리꼴 모양, 얇고 긴 바늘 모양, 얇은 직사각형 모양, 얇고 긴 띠 모양,

길쭉한 삼각형 모양 등의 형상을 띠고, 이 사건 토지들 중에는 폭이 넓은 토지가 없는 반면,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다른 토지들은 모두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폭도 넓은 사실, 이 사건 토지들 중에는 3m^2 , 7m^2 , 11m^2 , 12m^2 , 13m^2 , 16m^2 , 19m^2 , 20m^2 , 24m^2 , 25m^2 , 26m^2 , 30m^2 , 33m^2 등 그 면적이 눈에 띄게 작은 필지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현재 도로, 주택가 골목길, 인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총 5필지는 현재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전신인 조합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로와 농업용수로 등

농지개량시설(농업기반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밝혀 왔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각 토지별로 구체적인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인근 농경지의 효용 증대를 위한 농로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① 갑 제5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 토지들은 1947. 1. 11.경에는 모두 농경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1966. 11. 3.경과 1969. 2. 12.경에도 대부분 농경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1972. 2.경에는 대지로 전환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은 농경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0,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 토지 100필지 중 약 80% 정도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에서 '대(垓)'로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의 경우 지목 변경이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 2002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들을 수용 또는 매수하여 그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등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목적사업 중 하나인 농지개량시설(농업기반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를 그 원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과정에서 그 밖의 어떤 이익이나 편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토지수용 또는 매수를 통하여 취득할 당시 그 대상 토지를 특정한 자료 자체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2 내지 15, 17, 18, 22, 23, 32 내지 46, 50호증의 각 2, 3, 갑 제6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7, 28, 을 제9호증의 1, 2, 4, 6, 9, 10,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의 경우 BH 토지에서 1957. 12. 31. BI 토지로 분할되었는데(그 후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 분할 후 BH 토지에 관하여는 1962년경 R 주식회사에서 개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그 후 BJ로 행정구역 변경), 위 순번 1 토지에 관하여는 1972. 12. 23. 당시 원고의 전신인 BF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3 토지의 경우 BK 토지에서 1957. 12. 31. BL 토지로 분할되었는데(그 후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 분할 후 BK 토지에 관하여는 1964. 11. 6. R 주식회사에서 바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그 후 BM로 행정구역 변경), 위 순번 3 토지에 관하여는 1972. 12. 23. 위 BF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5 토지의 경우 BN 토지에서 1957. 12. 31. BO 토지로 분할되었는데(그 후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 분할 후 BN 토지에 관하여는 R 주식회사에서 1961년경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1), 위 순번 5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 11. 위 BF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7, 14 내지 16, 38 토지의 경우에도 각각 BP 토지, BQ 토지, BR 토지, BS 토지, BT 토지에서 1957. 12. 31. 또는 1959. 12. 1. 또는 1960. 7. 25.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모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1961~1965년경 R 주식회사에서 바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순번 14 내지 16 토지에 관하여는 1972. 12. 23., 위 순번 7, 38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 11.

각각 위 BF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㉞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4, 6, 8 내지 10, 12 13, 18, 19, 23 내지 34, 36, 37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수용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57. 3. 2. 또는 같은 해 3. 20.이나 분할절차를 거쳐 위 BF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위 ㉞ 내지 ㉞에서 살피본 토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72. 12. 23. 또는 1973. 1. 11.인 사실, ㉞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2, 11 토지의 경우 원고가 1957. 3. 20. 수용하기 전인 1949. 3. 30. 분할된 상태였고, 순번 35 토지의 경우에도 원고가 1965. 6. 3. 수용하기 전인 1957. 12. 31. 분할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㉞ 갑 제31호증의 2, 3, 갑 제6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5호증, 을 제10호증의 6, 7,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22 토지의 경우 원고의 전신인 BF토지개량조합이 1965. 12.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BU 토지(그 후 BV으로 행정구역 변경)에서 분할된 것으로, 당시 BF토지개량조합은 위 BU 토지 이외에 모토지인 BW 토지를 전부 취득하였다가 농지 부분은 분할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BW 토지는 원래 국유의 하천부지(제방)였다가 제방으로 활용이 되지 않자 인근 주민들이 이를 농지 및 농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BF토지개량조합이 이에 대하여 1963. 3. 농경지 및 농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63. 9.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 및 농도로 조성하였고, 그 후 이를 전부 매수하여 농지는 연고 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개간지 중 일부인 위 BU 토지는 농지개량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3조2)는 농업생산기반시설3)을 그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전신인 조합들의 근거법령도 모두 농지개량시설(농업기반시설)을 목적사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 농경지가 대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각 토지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와 같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근 농경지의 대지화로 이 사건 토지들이 더 이상 농지개량시설로 이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갑 제2 내지 15, 17, 18, 21 내지 23, 25, 29, 31 내지 46, 50호증의 각 1,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 농경지가 모두 대지로 변경된 이후인 2005. 6.경 '목적외 전담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에서는 수혜면적이 거의 없거나 적은 서울 지역부터 우선 조사한다고 하면서 서울 지역의 조사대상으로 "BX동(3필지), BY동(1필지), BZ리(3필지), CA동(52필지) 지역 일원"을 들고 있고(위 BY동 1필지와 CA동 52필지에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현황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현황 조사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용도폐지 자산, 무단사용 토지, 원상복구 대상토지 등을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활용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자산현황 조사표'가 작성되었고(토지 소재지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 주위 현황, 자산번호, 사용면적과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분'란에는 '목적 외 사용', '무단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그중 일부 조사표에는 '기타'란에 피고 측과 협의 및 보상요구를 하였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또한, 갑 제53호증의 1, 2,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22 토지에 관하여 1989. 3. 16.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도시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1986~1987년경에 보상하기로 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보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상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 이에 피고는 1989. 4. 3.경 피고의 예산 형편상 1989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어려우므로, 1990년 이후 사업시행 시 보상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달라는 회신을 보낸 사실, ㉡ 그러나 그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1990. 5. 31.과 1992. 3. 17.에도 '농지개량시설 용지보상 촉구'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4. 12.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한된 상태로 평가한 차임의 합계는 525,851,300원이고, 2011. 12. 31.경의 이 사건 토지들의 월 차임 합계는 7,327,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이 진행된 2012. 1.경 이후로 환송 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9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의 기초가격이 위 감정시점 당시보다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2. 1. 1.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의 월 차임 역시 적어도 7,327,3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한 이후로서 2006. 4. 12.부터 2011.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473,33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2.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2. 1.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5) 까지 월 7,3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형근

판사송혜정

판사민달기

별지

- 1) 구 토지대장상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기재 전에 '국'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국가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졌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 2) 농어촌정비법이 1994. 12. 22. 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이래 조문 위치는 변경되었다.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이를 '농업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4)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시행된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 제22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시행된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9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6. 6. 30. 시행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7조.
- 5) 원고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이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장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료 시점은 '피고의 점유 종료일'로만 정한다.